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404795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4.06.03.] http://www.setaga-ya.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9.30.]

[세타가야]

정보공개서

[株式会社せたが屋(주식회사세타가야)]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株式会社せたが屋(주식회사세타가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 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 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mark>3-5731-6511</mark>]

[팩스 : 0<mark>3-5731-6512</mark>]

[가맹사업담당: 03-5731-651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7	7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0	O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1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7	7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31	1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3	3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6	5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37	7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 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공개서의 '당사' 또는 '가맹본부'라 함은 株式会社せたが屋(주식회사세타가야, 일본)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들) 혹은 본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자(들)를 의미합니다. "엔화"로 표시하지 않은 금액은 한국 원화를 의미합니다. 당사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피지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현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는 지급 시점에 당사가 지정한 환율기준에 따라 모든 금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株式会社	세타가야		東京都世田谷区野沢二丁目1番2号				
せたが屋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식회사	2003.5.19		2003.5.19	前島司	03-5731-6511		03-5731-6512
세타가야)	법인등록번호 010		9-01-018138	사업자등	등록번호		-

일본의 법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해당 사항 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세타가야]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세탁가야	
상 호	세타가야 00점	
상표(서비스표)	세타가야	출원번호 : 40-2024-0049073
광 고		
	せたが屋	출원번호 : 40-2024-0049075
그 밖의 영업표지	SETAGAYA	출원번호 : 40-2024-0049074
그 밖의 영업표시	E 18	출원번호 : 40-2024-0049076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엔,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년 2월	1,538,061	1,282,633	<mark>255,428</mark>	1,075,825	-173,310	31,465
2023년 2월	1,197,227	1,156,168	41,059	1,407,090	-55,482	-214,369
2024년 2월	1,063,251	1,148,747	-85,496	1,842,677	30,804	- 126,555

당사의 사업연도 말일은 2월 말일입니다.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상기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 컨텐어구 -	기급	인 경제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前島司	대표이사	<mark>2003/5/19~현재</mark>	대표이사	업무총괄		
	矢野 真也	이사	2013/6/27 ~ 현재	이사	이사		
가맹사업	小澤 典裕	이사	2020/5/20 ~ 현재	이사	이사		
비관련 임원	秋月 大輔	이사	2024/1/1 ~ 현재	이사	이사		
	高野 由里子	감사	2016/6/27 ~ 현재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24	임원-	수(명)	지이스/대)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4년 2월 29일	2	3	6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해당 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세 타가야 (상표권)		2024.03.18. 출원	출원 4020240049073	가부세키가이샤 세타가야	-
せたが屋 (상표권)		2024.03.18. 출원	출원 4020240049075	가부세키가이샤 세타가야	-

SETAGAYA (상표권)	가맹점 운영 관련	2024.03.18	출원	출원 4020240049074	가부세키가이샤 세타가야	-
(상표권)	전된 계약서에 기재된 범위	2024.03.18.	출원	출원 4020240049076	가부세키가이샤 세타가야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상표권은 현재 출원 중으로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세타가야] 가맹사업 현황

1. (세타가야)를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당사는 2003년 05월 19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직영점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 (세타가야) 연혁

가맹본부 상호	여어교기	대표자의	가맹사업 경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행군구 경오	영업표지	이름	기간	구선 시구조의 조세시
株式会社				
せたが屋	세타가야	 前島 司	가맹사업 예정	東京都世田谷区奥沢5-26-3
(주식회사	게되기약	<mark>別局 り</mark>	/ ö/\ u M/ö	JIYUGAOKA K's 301
세타가야)				

3. (세타가야) 업종

영업표지	업종				
세타가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일식	라멘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세타가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7] (1)		2022년 2월	길		2023년 25	실	2024년 2월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_	_	-	_	_	-	_	_
서울	_	-	_	_	_	-	_	_	_
부산	-	-	_	-	_	-	-	-	_
대구	_	-	-	-	_	-	-	-	_
인천	-	-	_	_	-	-	-	-	_
광주	_	_	_	_	_	_	-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_	-	_	_	-	-	_	-	_
경기	_	-	_	_	-	-		-	_
강원	-	-	-	-	_	-	-	-	_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_	-	_	_	-	-	_	-	_
전북	_	-	_	_	_	_	_	-	_
전남	_	-	_	_	_	-	-	_	_
경북	-	-	-	_	_	-	_	_	_
경남	_	-	_	-	_	-	-	-	_
일본	_	-	_	-	-	_	-	-	_

지역		2022년 2월			2023년 2월			2024년 2월		
715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일본	4	_	4	4	_	4	4	_	4	

[당사의 사업년도 말은 2월 말일입니다.]

5. 바로 전 3년간 [세타가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2월	_	_	_	_	_	-
2023년 2월	-	_	_	_	_	-
2024년 2월	-	-	_	_	-	-

6. [세타가야]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세타가야]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세타가야]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바로 전	<u></u> 사업연도	가맹점사업:	자의 연간	평균 매출	.액	
지역	2024년 지역 2월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 매출액(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_	해당없음						
서울	_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_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_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_	해당없음						
세종	_	해당없음						
경기	_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_	해당없음						
충남	_	해당없음						

전북	_	해당없음			
전남	_	해당없음			
경북	_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4년 2월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프 매출액(연간 매출액(-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일본	-	해당없음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에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습니다.]

8. [세타가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세타가야]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2월	-	_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에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세타가야]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 2월]에 [세타가야]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4]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비고
-------	----	-------------------	----

		미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	해당사항 (었음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예치 대상 가맹금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사항 없음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세타가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엔,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000]				
가맹비	1,000	영업 개시 후 1일 이내	반환 되지 않음	-	법령이 허락한 상황 외에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엔,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해당 사	한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엔, 부가세 포함)
해당 사	항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엔, 부가세 포함)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_			25평
필수설비(정착물)	자율선정업체	-	-	물품공급 3주 이전	제작전 계약취소	기준(면적, 구조, 개별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자율선정업체	-	-	내부 인테리어 공사 체결후 1일이내	공사시작전 계약취소	있음) / 실재 면적과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적
간판	자율선정업체	-	-	제작 착수 1일 이전	제작전 계약취소	있습니다. 한작 당 금액은 25평 기준 금액을 면적으로 나누었을 뿐 면적에 따라
초도 물품	가맹본부	-	-	발주 당일	공급 취소	정액으로 증액/감액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비 및 인테리어 등의 시공과 설치는 귀하가 자율적으로 업체를 지정/공사/설치합니다. 일본 내 직영점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유추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하였습니다. 반드시 당사가 제공한 설계 자문이나 설비기준, 디자인 등에

따라 시공/설치 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점포의 형태 등)하고 가맹희망자의 요청과 협의에 의하여 선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세타가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별도 내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물품 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주방집기	냉장고 등	추후 별도 계약	자율선정
외부	외부	추후 별도 계약	자율선정
시구 	간판	추후 별도 계약	자율선정
내장재	내장재	추후 별도 계약	자율선정

8) 당사는 가맹금 분할납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총 매출액의 3%	매 익월 5일			반환 불가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31p 참조				31p 참조
판촉분담금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에 따름	협의에 따름			필요시 이수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업체	선정업체의 견적에 따름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해당업체	협의 후 결정	협의 후 결정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설치비 면제

		지급기일의		월 계속가맹금의
지연이자	연20%	다음날부터		지급기한을
		지급하는 날까지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 니다.

구분(기준: 2023년 3월 ~ 2024년 2월)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사항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필요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갱신비 없음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1일 이 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 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가맹점 운영

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 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 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최초 가맹계약기간 이내의 가맹점인 경우 일부 가맹비 및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세타가야]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세타가야]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른 가맹비, 교육비 등 각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 혹은 당사가 지정한 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파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세타가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 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경영환경의 변화, 공급처나 유통업체 사정 등으로 품목 및 가격 등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해당사항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세타가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세타가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세타가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시오 타마 라멘 시오 차슈멘 시오 라멘 히루가오 모리 소유 라멘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소유 차슈멘	게임을 단배할 수 없음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토로리파이탕 시오타마 라멘	
카라미파이탕 시오타마 라멘	
세타가야 시키 오야코동	
카레 라이스	
아부리 차슈동	
야키교자	
토리카라게 카오리유즈 소스	
아츠기리 차슈번	
에다마메 갈릭 페퍼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시오 타마 라멘	11,000		
시오 차슈멘	13,000		
시오 라멘 히루가오 모리	14,000		
소유 라멘	11,000		
소유 차슈멘	13,000		
토로리파이탕 시오타마 라멘	12,000		
카라미파이탕 시오타마 라멘	12,500	ਸੀ ਸੀ ਹੀ ਹ <i>ਹ</i> ੀ	2024년 05월 기준
세타가야 시키 오야코동	4,000	변경 시 공지	2024인 03월 기군
카레 라이스	<mark>4,500</mark>		
아부리 차슈동	<mark>4,500</mark>		
야키교자	4,000		
토리카라게 카오리유즈 소스	<mark>5,000</mark>		
아츠기리 차슈번	3,000		
에다마메 갈릭 페퍼	<mark>3,000</mark>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할 어쪼 뛰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본식 라멘을 취급하는 요식업	세타가야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가능 (가맹계약 시 지도 별첨 가능)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간에 영업지역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난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세 타가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세타가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년 2월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년 2월	0%	0%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기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세타가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식자재 및 물품대금, 보증금, 로열티, 기타 용역 제 공비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_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 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27조
○ [세타가야]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신규 교육을 포함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 혹은 지정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가맹금, 식자재 및 물품	
대금, 보증금, 로열티, 기타 용역제공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요구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의 원,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	
를 위반하여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자체 제작하여 영업하는 경 우. ○ 가맹본부 혹은 지정업체가 제공하는 장비, POS시스템, 상품, 모자, 유니폼,	
간판 및 매장 내·외부 홍보물, 전단지 등 기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매뉴얼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8조
○ 음식 조리매뉴얼(RECIPE)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하여 영업하는 경	\ \Z03E
우.	
○ 대금 결제가 1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 가맹본부 동의 없이 7일이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 동의 없이 점포의 위치 이전, 양도를 한 경우	
○ 허락 된 범위 외에 상표 및 영업표지 등을 사용한 경우	
○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본부 의 동의 없이 수량한정판매, 가격할인 혹은 증액 등을 실시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 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 면허 ·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

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수할 것 ○ 양수인에게 원활한 운영 이 불가능한 요인이 없 을 것	가영심사합사가 시원으로 중도 선정 → 당사 임 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 스 야도 계야 체계(5인 쇼요) → 카메저으여권 이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가맹금 및 협의 된 각종 실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혹은 위탁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본사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당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 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혹은 해지 후 1년 동안 [국내 및 국외에서] 귀하가 [세타 가야]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세타가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12시간 이상	주 6일 이상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8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정규 직원	점주 및 점주의 정규 직원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현장지도	필요시	매장담당	불시 점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현장지도	필요시	매장담당	불시 점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세타가야]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13	구분 광고 성격		비율	분담 절차	비고
一个正	성고 경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한당 설시	미끄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25%	광고비 75% 중 가맹점	광고 계획 가맹점부담액 제시 공고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지급	대중매체(sns, 유투브 광고 명절, Day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 :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시 등	_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가 위와 같이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전국 규모 혹은 자신이 속한 지역규모의 광고 및 판촉활동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기로 합니다. 다만 판촉 행사 등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와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가맹점사업자 전원에게 균분하여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조리방법, 영업방법, 레시피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레시피 및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 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8조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존속 중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세타가야'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양도 및 상호변경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③ 가맹접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9조(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사에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및 해지 이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 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 상액으로 1일당 금일백만원(₩1,000,000원)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 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맹본부는 배상의무가 있다.
- ⑥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 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배상의무가 있다.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채무를 보증금으로서 정산할 수 있으며 차액, 추가적 손해, 법무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8p~30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점포실측/설계 교육일정협의	- 투자비 산출 - 교육일정 확정	D-29 ~ 25(5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협의된 일정에 따라 교육 시작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최종 교육	- 점포운영교육 마무리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 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

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비고
	비용항목	비용비율	118 21	제외사유	-1
o점포의 시설, 장비,	ㅇ간판교체 비용	o점포의 확장 또는	o가맹점사업자의	o점포환경개선일	
인테리어 등의	이테어 광배용	이전을 수반하지	비용 청구(공사	로부터 3년 이내에	
노후화가 객관적	(장바잡기의 교체	않는 점편경1선	계약서 등 공사	가맹본부의 책임	
으로인정되는경우	비용을 제외한	: 20%	비용을 증빙할	없는 사유로 계약이	
o위생이나 안전의	실내건 축공 사에	o점포의 확장 또는	수았셔構	종료(계약의 해자)	
결함으로 인하여	소요는 알위 내용	이전을 수반하는	→ 90일 이내에	영양도 포함타	
7맹업 횡생	단, 가맹사업의	점포환경개선	기맹본부 부담액을	경우 가맹본부	
유하기 어렵거나	통일성과 무관하게	: 40%	7맹점사업자에게	부담액 중 잔여	
정상적인 영업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기간에 비례하는	
현저한 지장을	추가 광를 실시		(단, 가맹본부와	부담액은 지급치	
주는 경우	함에 따라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간	아니하거나 이미	
	비용은 제외)		별도의 합마가 있는	지급한 경우에는	
			경우 1년의 범위내	환수 가능	
			에서 분화답기능		
			ㅇ가맹점사업자		
			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화급시절차>		
			o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았세		
			→ 3차에 걸쳐		
			기맹본부 부담애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 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신규개점 지원	가맹점 오픈 시 운영지원인력 파견	가맹점 요청시	3개월	-	1명 파견 / 운영인력지원비용 가맹점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 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신 메뉴 출시 등의 사유로 인해 가맹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교육 및 경영지도	경영지도내용, 기간, 소요 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경영지도내용, 기간, 소요 비용 등 포함)을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가맹점 부담	_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세타가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세타가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조리방법, 식자재관리방법 등	실습교육 개별,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조리교육 등	필요시	-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세타가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30일	0	최초 계약시 이수 2인 참여 가능 / 파견 교육시 비용 별도 협의
보수 교육	1일	협의 후 결정	필요시 이수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계약서에 따라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국내 해당 사항 없음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일본	세타가와 본점	東京都世田谷区野沢2-1-2
2	일본	하네다공항점	東京都大田区羽田空港2-6-5羽田国際空港ターミナル江戸 小路4F
3	일본	토쿄돔점	東京都文京区後楽1-3-61東京ドームシティ内 GO-FUN
4	일본	pasar하스다점	埼玉県蓮田市川島370 東北自動車道 蓮田SA Pasar蓮田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2월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국내 해당 사항 없음		
2024년 2월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1년 9개월	일본 내 직영점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엔, 부가세 미포함)

2024년 2월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국내 해당 사항 없음			
2024년 2월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59,582	[당사의 일본 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 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 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3-5731-651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 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